

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2월 10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(주)프리모리스테라퓨틱스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2025년 1월 24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9층
주식회사 강스템바이오텍 대표이사 나종천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